

전주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단8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316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단850 판결

전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이창헌, 한지영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중, 김은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솔

변론 종결2021. 1. 20.

판결 선고2021. 2. 24.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78,115,5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115,5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7. 2. 22. C은행으로부터 이자는 변동금리(시장기준금리 + 연 2.07%)로, 변제기는 2018. 2. 20.로 정하여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20. B과 사이에 보증기한을 2018. 2. 20.까지로 하여 원고가 보증원금 7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B의 C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2. C은행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와 위 보증기한이 모두 2020. 2.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B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지체하자 C은행은 2019. 11. 22.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12. 9. C은행에게 보증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 중 원금 76,500,000원과 이자 825,906원(2019. 10. 9.부터 2019. 12. 8.까지 위 원금에 대한 연 6.46%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77,325,9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와 B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대위변제금 외에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구상권의 보전에 든 비용을 변제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10%이고, 원고는 구상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364,72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B은 2019.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2. 26.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6, 7,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B은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바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대위변제일에 피고에게 환급해야 할 보증료 229,500원을 상계처리하여 구상금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범위는 대위변제금 잔액 77,096,406원(= 77,325,906원 - 229,5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부터 2020. 1. 8.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54,391원(= 대위변제금 77,325,906원에 대한 2019. 12. 9. 1일의 지연손해금 + 환급보증료 상계처리 후 남은 대위변제금 77,096,406원에 대한 2019. 12. 10.부터 2020. 1. 8.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가압류신청 비용 364,720원 합계 78,115,517원이 된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076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 제6,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2014.

10. 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 B은 2018. 10.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반복해서 연체하였고 연체기간도 대부분 1개월 내지 3개월에 이르렀던 사실, B은 2019. 9. 30. 당시 운영하던 'D'의 영업을 폐업하였고 2019. 10. 8. 이후부터는 앞서 본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이자납입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이 2019. 2. 1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약 7개월 남짓 경과한 무렵 'D' 영업을 폐업하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의 채무초과 상태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그 가액 및 소극재산과 그 채무액이 다음 [표1], [표2]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표1] 적극재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75,305,9001) 을 제14호증(감정평가서)의 2019. 2. 10.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7,693,900원 중 기계기구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갑10, 을14
2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2010년식)	7,600,000	다툼 없는 사실
3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2006년식)	3,590,000	다툼 없는 사실
4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2006년식)	4,300,000	다툼 없는 사실, 갑16-1
5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자동차(2007년식)	4,800,000	다툼 없는 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75,305,9001) 을 제14호증(감정평가서)의 2019. 2. 10.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7,693,900원 중 기계기구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갑10, 을14
			갑16-2
6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	130,000,000	갑18
7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H호		
합계		325,595,900	

[표2] 소극재산

1	E은행 대출금	85,000,000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2020. 3. 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	E은행 대출금	54,000,000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2020. 11. 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3	C은행 대출금	107,650,753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2020. 11. 1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금	33,578,765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20. 6. 2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5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	을3, 5
합계		330,229,518	

나) 피고는 2017. 10. 20. B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차하면서 B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표2] 순번 6번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대여하였던 돈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한 것이고, 이에 따라 B로서는 장차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표2] 순번 5번 기재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B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피고에게 위 [표2] 순번 5번 기재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단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표2] 순번 5번 기재 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만을 받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 가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② 피고와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에 근접한 가격이다. 그러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E은행에 대한 8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종전에 B에게 지급하였던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한 것 외에는 B에게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135,00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2008. 12. 26. 및 2010. 11. 18. B에게 각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동일한 양식의 각 차용증(을 제1, 2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2016. 6. 22.부터 2017. 10. 17.까지 사이에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합계 49,000,000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한 반면, B에게 실제로 위 6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와 B이 부자지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용증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에 대하여 위 6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설령 피고가 B에 대하여 위 6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대여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종전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하였는바, B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에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가 다른 일반채권자에 앞서 B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B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위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⑤ 경험칙상 피고는 B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 가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만을 받고 매각하는 경우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심화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피고와 B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매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 때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2020. 3. 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02,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E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2. 11.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175,427,700원²⁾ 이고,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5,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부터 2020. 1. 8.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가압류신청 비용 등 합계 78,115,517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인 90,427,700원(= 175,427,700원 - 8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78,115,517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78,115,5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78,115,5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중문

별지

1) 을 제14호증(감정평가서)의 2019. 2. 10.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7,693,900원 중 기계기구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 을 제14호증(감정평가서)의 2020. 12. 11.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7,473,700원 중 기계기구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